

미디어 융합에 대응한 EU의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정회원 김 방 룽*

The Evaluation on EU's Info-Communication Regulatory Policy in Preparation for Media Convergence

Pang-Ryong Kim* Regular Members

요 약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현실을 반영한 이 규제의 틀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방향성을 지하고 있다. 「2003년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미디어 횡단적인 규제체계, 일반인중에 입각한 진입규제의 완화 및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Key Words : EU, Regulatory Framework, 사전규제, 사후규제, 진입규제

ABSTRACT

The structure of info-communications industry has been changing from vertical integration to horizontal layered disintegration as the Internet technology has been rapidly developed. Considering with this background, EU has decided to introduce new regulatory framework called 2003 framework and asked member states to shift to new framework by July 2003. The key words of the new framework is to be denoted by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Introduction of cross-media regulatory framework, Alleviation of entry regulation by general authorization, Transition from ex ante regulation to ex post regulation.

I. 서 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이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EU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일부 가맹국을 제외하고는 음성통신 전 분야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본 고에서 사용되는 자유화라는 용어는 규제가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장에 신규진입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도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 지침이 지속적으

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EU의 규제체계는 최근까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EU 가맹국들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응하는 동시에 규제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02년 3월에는 새로운 규제체계인 프레임워크 지침(Framework Directive)을 비롯하여 4가지 지침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데이터보호 지침(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등 몇 가지 지침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EU는 2003년 7월 24일까지 가맹 각국이 이를 새로운 규제체계(이하 「2003년 프레임워크」)로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영국의 경우, EU의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prkim@etri.re.kr)
논문번호 : 040070-0209, 접수일자 : 2004년 2월 4일

하기 위해 2003년 7월 17일에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을 개정·발표하였다.

「2003년 프레임워크」체계는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미디어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체계는 현저한 시장지배력(SMP: Significant Market Power)을 가진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 한정하여 사전규제를 존속시키고, 그 밖의 시장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로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SMP란 한 국가내의 특정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2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자를 지칭한다. 단, SMP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당해 서비스의 시장규모, 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규제당국의 판단에 유보한다[1].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9월, 정보통신부가 향후 미디어 융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 분류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2]. 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시내 및 시외 전화를 국내전화로 통합하고,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음성/데이터 전송 서비스로 통합하는 한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관련 설비까지 포함하는 세 가지 조치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이 개선안은 개방적이고도 진취적인 「2003년 프레임워크」에 비하면 규제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미미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03년 프레임워크」는 강제적 규정이 아닌 방향제시적 성격이 강한 규제체계이며,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이 실제로 규제수준을 설정할 때에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03년 프레임워크」의 주요내용인 미디어 융합에 대응한 규제체계, 진입규제의 완화, 시장 획정에 기초한 사후규제로의 이행의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2003년 프레임워크」는 EU의 통신규제에 관한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Green Paper의 체계를 계승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미 1987년에 발표된 Green Paper를 중심으로 EU의 통신규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우선 살펴보고, EU 규제체계의 개편과정을 개관한 후, 「2003년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 및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EU 통신규제의 기본원칙

1982년부터 통신부문에 경쟁도입을 추진했던 영국을 제외하고, EU에 속하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EU에서는 이미 계획된 통신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일부 가맹국을 제외하고 음성통신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부문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3]. EU의 통신규제에 대한 기본원칙은통신서비스와 기기시장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제안된 1987년의 Green Paper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3가지의 기본원칙은 EC조약 제9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독점분야의 자유, EC조약 제100 a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유럽시장의 조화, EC조약 제85조와 제86조 및 합병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경쟁규칙의 적용이다[4].

1. 독점분야의 자유

독점분야의 자유화조치로 터미널 장비공급은 1988년에 자유화되었으며, 이어 1990년에 Service Directive(90/388/EC)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 부가가치서비스, 데이터통신서비스, 사내망 및 특수사용자 그룹을 위한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가 자유화되었다. Service Directive는 위성통신 규제와 관련한 Satellite Directive (94/46/EC), 케이블TV네트워크 사용에 관한 제한 철폐를 주 내용으로 하는 Cable TV Directive (95/51/EC), 이동 및 개인통신 규제와 관련한 Mobile Communication Directive (96/2/EC), 통신시장의 완전경쟁 이행과 관련한 Full Competition Directive(96/19/EC) 등, 4개의 Directive를 채택함으로써 완성되었다.

이 중 Full Competition Directive에서는 통신망이 발전하지 않은 가맹국에 대해서는 최대 5년, 통신망의 규모가 작은 가맹국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완전자유화 실시 유예기간을 허용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1998년 1월 당시,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부르크가 자유화 실시를 유예 받았다.

유럽위원회는 1999 Communications Review를 발표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급격한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규제체계를 대폭 개정하여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시내전화시장에서 보다 경쟁을 가속화하고,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제안 배경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에는 새로운 경쟁 지침(2000 Competition Directive)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Service Directive 발표 아래,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지침으

로 산재해 있던 관련조항들을 하나로 편리하게 묶은 것이다. 그러나 2000 Competition Directive는 가맹국들에게 새로운 의무조항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2. 유럽시장의 조화

이 원칙은 소위 ONP(Open Network Provision)라고 불리는 공중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접속원칙을 토대로 유럽 통신시장 내에서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ONP는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공동규제환경 및 조화기준을 마련하여 단일 유럽시장을 창설하는 일련의 조건들을 정하고 있다. 1990년에 ONP Framework Directive (90/387/EEC)를 발표하면서 기술적 인터페이스, 요금산정원칙 및 사용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 접속규칙을 정하였으며, 이후 이 지침은 계속 수정하기로 되어 있었다[5]. 이에 따라 1992년에는 전용회선의 조화로운 공급에 관한 지침서인 ONP leased lines (92/44/EEC)를 발표하였고[6], 1995년에는 음성전화지침인 ONP Voice Telephony(95/62/EC)를 채택함으로써 고정공중전화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접속 및 사용 조건을 제시하여 보편적서비스의 기본요소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7년 4월에는 면허조건에 비차별성 및 투명성을 요구하고, 개인면허 허가사항을 제시한 Licensing Directive(97/33/EC)를 발표하였고[7], 1997년 6월에는 Interconnection Directive (97/33/EC)를 발표하여 현저한 SMP를 소유한 사업자에게는 네트워크접속과 관련한 모든 요청을 충족시키고, 별도의 투명한 비용계산 시스템을 유지하여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였다[8]. 뿐만 아니라 2003년 1월 1일까지 주요 인구집중지역에 번호이동성을 실현하고, 회원국들이 보편적서비스 원가를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도록 투명한 회계분리 시스템을 요구하였다.

1997년 6월에는 통신시장에 경쟁원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ONP Framework Directive와 ONP leased lines를 수정한 ONP Framework and leased lines amending을 발표하였다[9]. 또한 유럽위원회는 1997년 10월에 Interconnection Directive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유럽번호체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2000년 1월 1일까지 사업자사전선택과 번호이동성의 도입을 각 가맹국에 의무화하였다.

3. 경쟁규칙의 적용

EU는 Green Paper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서에서 통신분야에 경쟁규칙을 도입한다는 의지를 밝혔다[10]. 이에 따라 1990년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경쟁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으며[11], 1991년에는 향후 자유화될 정보통신시장에 EC 경쟁규칙을 완전하게 적용시키는 지침을 조약 제85조, 제86조 및 Merger Regulation을 근거로 하여 발표했다[12]. 또한 EU는 1996년에 통신망접속에 경쟁규칙을 적용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경쟁규칙의 적용은 유럽의 정보통신분야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III. EU 규제체계의 개편과정

1998년 1월을 기하여 단행되었던 EU의 자유화는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선진국들에 비하여 그 진행이 매우 느린 편이었다. 미국에서는 1974년, MCI의 장거리 통신시장진입에 따른 Execunet 판결 이후에 음성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판결은 MCI에 유리하게 결정되어 1978년에는 MCI의 장거리 진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그 대신 MCI는 AT&T에 대하여 시내적자부담에 상응하는 접속료를 지불하게 되는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MCI의 장거리시장 진입은 기술진보가 시장구조를 변화시킨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13]. 한편, 영국의 경우 그 동안 독점을 유지해왔던 통신시장에 1982년 Mercury사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였다. 1991년에는 BT와 Mercury의 복점체계를 종료시키면서 CATV 사업자에게도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면허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1985년에 전기통신 전분야에서 자유화를 실시하였다.

2000년 12월에 발표되었던 전기통신규제의 도입상황에 관한 제6차 보고서에서는 1998년 1월, 통신시장의 완전자유화 선언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EU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의 대체적인 결과는 EU공동체는 과거의 문제점을 급속도로 극복하면서 규제완화에서 성공을 한 편이라고 결론지었다[14].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EU 가맹국에서는 여전히 구 국영독점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실정이다. 「2003년 프레임워크」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EU에서 시행된 1998년 자유화 이후의 규제체계는 표1에 제시된 것처럼 1998년 규제패키지(The 1998 Regulatory Package)라고 불리는 약 20개에

이르는 개별 지침으로 서비스별로 각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이 그 전부터 추진해온 경쟁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경쟁도입 초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규제패키지를 활성화된 시장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99년 11월에는 The 1999 Communications Review가 발표되면서 규제체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현재까지의 서비스별 규제는 기술혁신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체계이기 때문에 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신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일 규제의 틀을 적용하지만, 방송과 그 밖의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의 컨텐츠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취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15].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Directive 2000/31/EC에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16].

표 1. 1999년 규제패키지와 2003년 프레임워크 비교

1998년 규제패키지	2003년 프레임워크
ONP Framework Directive (90/387/EEC, 97/51/EC 수정)	Framework Directive (2002/21/EC)
Licensing Directive(97/13/EC)	
GSM Directive(87/372/EEC)	
ERMES Directive(90/544/EEC)	
DECT Directive(91/287/EEC)	
Satellite-PCS Decision (97/710/EC)	Authorization Directive (2002/20/EC)
UMTS Decision(99/128/EC)	
European Emergency Number Decision (91/396/EEC)	
International Access Code Decision(92/264/EEC)	
ONP Leased Lines Directive (92/44/EEC, 97/51/EC 수정)	Access Directive (2002/19/EC)
TV Standards Directive (95/47/EC)	
Interconnection Directive (97/33/EC)	
Voice Telephony Directive (98/10/EC)	Universal Service Directive (2002/22/EC)
Service Directive(90/388/E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tellite(94/46/EC) • Cable(95/51/EC) • Mobile(96/2/EC) • Full Competition(96/19/EC) • Cable Ownership(99/64/EC) 	Consolidated Directive (2002/77/EC)
Telecommunications Data Protection Directive (97/66/EC)	Data Protection Directive (2002/58/EC)

The 1999 Communications Review는 공청회를 거쳐 2000년 7월에 2000 Competition Directive로 발표되었다. 이 지침은 다시 공청회를 거치면서 2002년 3월에 규제의 구조를 규정한 Framework Directive (2002/21/EC) 등 4개의 지침으로 정비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 진행이 지체되고 있었던 Data

Protection Directive(2002/58/EC)가 2002년 7월에 발표되었으며, 기존의 개별 지침들을 정리한 Consolidated Directive (2002/77/EC)도 2002년 9월에 발표되었다. 이로써 현재 EU에서의 최종적인 규제체계인 「2003년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었다(표 1 참조). EU가맹국은 「2003년 프레임워크」에 따라 2003년 7월 24일까지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데이터보호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여유를 주어 2003년 10월 31일까지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였다.

표 1은 「1998년 규제 패키지」와 「2003년 프레임워크」의 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1998년에 20개에 달하였던 지침이 2003년에는 6개로 간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1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의 규제 건수의 변화 추이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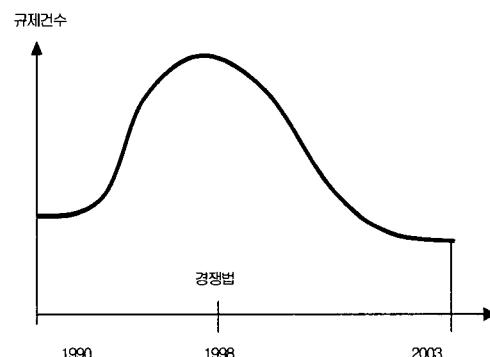


그림 1. EU에서의 규제원화 추이

자료: Peter Scott, "Regulatory Policy in an Era of Convergence," KISDI International Conference, Dec. 4, 2003.

IV. 「2003년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2003년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입법 작업은 가맹 각국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침이 어떠한 형태로 국가별로 구현될지 불명확하다. 이하에서는 이 지침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미디어 융합에의 대응, 진입규제의 완화, 사후규제로의 이행의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EU의 최근 규제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규제라는 용어는 주로 경제적 규제에 한정된다. 또한

사전규제란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저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사후규제란 경쟁저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경쟁법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1. 미디어융합에 대응한 규제체계

미디어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2003년 프레임워크」에서는 전자통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방송용을 포함한 모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즉 전자통신네트워크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와 그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전자통신서비스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에 관한 규제와 컨텐츠에 관한 규제를 분리하여 전자는 미디어 횡단적으로 규제하기로 하는 한편, 후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표 2. 참조).

표 2. 미디어융합에 대응한 규제체계

	규제 체계	비 고
규제 대상	전자통신 서비스	전자통신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전송서비스로 전기통신서비스는 물론 방송을 위한 전송서비스도 포함.
	전자통신 네트워크	전송시스템 및 교환·라우팅기기, 이동체, 전력케이블시스템, 라디오 및 TV방송을 위한 네트워크
비규제 대상	컨텐츠	정보사회서비스(전자상거래 등), 금융서비스, 방송용 컨텐츠

전자통신네트워크는 컨텐츠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컨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통신네트워크란 “컨텐츠의 종류를 불문하고 유선, 무선, 광학적 또는 그 외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신호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위성네트워크, 고정 (회선교환 및 인터넷을 포함한 패킷교환) 네트워크, 이동지상파 네트워크, 전자케이블시스템 등을 포함한 교환기, 라우팅관련설비, 신호전송을 위한 라디오TV방송용네트워크, 케이블TV네트워크”로 정의되고 있다 (Framework Directive, 제2조a)[18].

전자통신서비스란 “전자통신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신호전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상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전자통신서비스와 방송용네트워크의 전송부분이 포함되나, 전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컨텐츠의 편집기능과 정보사회서비스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Framework Directive, 제2조 b). 전자통신서비스는

전자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컨텐츠 전반의 전송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사항은 방송컨텐츠, 금융서비스 또는 정보사회서비스 등의 전자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전자통신네트워크 상에 전송되는 서비스는 「2003년 프레임워크」에서는 규제대상 외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Framework Directive, 전문 5). 이들 서비스는 각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정치·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국간에 규제제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대상 외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서비스, 컨텐츠의 3층(layer) 구조로 이루어진 「2003년 프레임워크」는 인터넷, 특히 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규제체계의 재구축으로 과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획기적인 규제체계이다. 종래 정보통신산업에서는 통신, 방송 등 미디어별로 수직통합이 이루어져 왔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모든 컨텐츠가 패킷화되어 물리적인 매체와는 독립적으로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물리적인 네트워크와 물리적인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전송서비스, 그리고 전송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되는 컨텐츠의 충별 분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직통합으로부터 충별 분리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도 물리적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의 각 충별 구조에 대응하는 형태로 재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산업구조가 수직통합에서 충별 분리로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종래의 수직통합형의 기업을 충별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수직통합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지, 충별 분리형으로 전환할지는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이 자사의 경영전략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2003년 프레임워크」 하에서도 동일 기업이 전송서비스와 컨텐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겸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인터넷접속사업자(I S 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전자통신서비스인 인터넷접속서비스와 컨텐츠서비스의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Framework Directive, 전문 10).

2. 진입규제의 완화

진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증지침(Authorization Directive, 2002/20/EC)에 따르면, 충별 분리에 대응한 규제체계의 도입에 따라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전자통신네트워크와 전자통신서비스사업에 진입하는 데 개별면허가 요구되었으나, 인증지침에 의하여 개별면허제는 폐지되고 신고제로 이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고제하에서도 다양한 행정지도가 수반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면허제와 다르지 않게 운용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러나 EU에서는 신고절차를 간략히 하여 사업자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회사등록번호만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Authorization Directive, 제3조)[19]. 또한 신고 시에는 규제기관에 의한 명시적인 결정이나 관리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신고를 하면 즉시 사업개시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행정관여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 고유의 문제로서 신고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화번호, 주파수, 공익 사업특권(선로부설권, Rights of Way) 등이 부여되지 않으면 사업수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의 규제개혁에서는 객관성, 투명성, 비차별성의 원칙에 따라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신고사업자에 대해 전화번호, 주파수에 대한 별도 사용권을 부여할 의무를 지게 하였다(Authorization Directive 제5조 및 Framework Directive 제9조~제12조). 공중 전자통신네트워크사업자에게는 공익사업특권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규제당국은 허가에 있어서 투명성, 비차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단, 컨텐츠 규제는 「2003년 프레임워크」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방송컨텐츠제공사업자에게는 컨텐츠제공사업자, 전송사업자로서의 별도 조건이 추가되었다(Authorization Directive 전문20). 또한 방송용무선주파수 이용권의 교부에 대해서도 특별기준절차의 존속을 인정하고, 특별조건을 추가하였다(Authorization Directive 제5조 2). 전자통신으로서 방송과 통신을 통일적으로 다루는 것을 의도하면서도, 방송에 대해서는 문화, 언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U[2002f], p.4)[20].

3.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

「2003년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비경쟁적인 분야에만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시장원리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규제는 경쟁이 유효하게 가능하지 않고 있는 시장에 한해 기술 중립적인 규제를 부과한다. 사전 규제를 적용할 분야를 정하기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경쟁법 원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통신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인정해 온 SMP의 개념을 경쟁법상의 “지배적(Dominant)” 개념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표 3. SMP 사업자의 의무사항

사업자	의무개요	요금	NRA 역할
도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회계정보, 기술조건, 네트워크 특성, 요금 등에 관한 조건개시) • 차별적 취급금지 • 회계분리 • 특정 네트워크 요소 접속의 무부과(local loop의 세분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베이스의 요금설정 의무 • 도매가격과 내부 거래 가격 개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이용자에 대한 접속 담당사업자에 상호접속의무 부과 • 분쟁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접속 교섭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간 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처리
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RA가 부과하는 의무 • 차별적 취급금지 • 불합리한 서비스 핸들링 금지 • 우선 접속(고정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요금규제 - 가격 상한 및 개별 요금규제 • 약탈적 요금설정에 의한 진입 및 경쟁제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P 사업자에 대한 의무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의무(공중 음성네트워크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 번호이동성(모든 공중음성서비스사업자) • 서비스품질 공표(공중전자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 공표 (공중음성서비스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처리

가맹국간 규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Framework Directive(2002/21/EC)에 의거하여 2002년 7월에는 시장분석과 SMP의 인정을 위한 가이드라인(EU[2002g]), 2003년 2월에는 관련시장에 관한 권고(EU[2003a])가 채택되었다[21, 22]. 여기서는 시장을 크게 소매와 도매로 나눈 다음, 다시 18개의 시장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가맹 각국에 대해서는 이에 기초하여 2003년 7월 25일까지 지리적인 시장을 확정하고, SMP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SMP로 평가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 3에서 제시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Framework Directive에 따르면 가맹 각국은 SMP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요구되고 있지만, 개별 규제에 대해서는 각 국가에 일임하고 있어서 실제로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를 모든 국가에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SMP 평가를 위한 시장획정에 있어서는 다음 3가

지 사항이 평가기준이 되었다(EU [2003b], p.10)[23]. 첫째, 법 · 규제상 구조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것. 둘째, 상당 기간 내에 경쟁적 시장이 될 가능성이 없을 것. 셋째, 경쟁법의 적용만으로는 해당시장의 실패를 해소할 수 없을 것. 또한 경쟁적인지 비경쟁적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수요공급의 대체성을 중시하고, 가상적 독점기업 가설 등을 이용했다(EU[2003b], p.7).

V. 「2003년 프레임워크」의 의의와 과제

1. 미디어 융합에의 대응

「2003년 프레임워크」는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전자통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방송용을 포함한 모든 「전자통신네트워크」, 그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전송서비스인 「전자통신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의해 유통되는 「컨텐츠」의 각 층별로 규제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수직통합형의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세분화되어 층별로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일본이 여전히 방송, 통신 등 미디어별로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 획기적인 규제 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이 미디어 융합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으므로 「2003년 프레임워크」도 완전한 미디어 융합을 전제로 하는 규제 틀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여기에 따르는 몇 가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컨텐츠는 「2003년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지 않고, 종래의 규제에 따른다는 점이다. 또한 시장진입시에 방송사업자에게는 컨텐츠제공사업자, 전송사업자로서의 사업 활동에 관해 추가적인 조건과 절차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미디어 획단적이라고 하면서도 방송컨텐츠와의 관련에서 사실상 통신과 방송이 별개로 취급되는 셈이 된다. 컨텐츠가 "방송"과 "정보사회서비스"의 어느 영역에 편입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규제 방식도 달라진다.

둘째, 네트워크와 전송서비스를 분리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양자가 일체인 것을 전제로 부과해 온 규제를 어떻게 취급할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령 보편적서비스의 하나의 요소인 경제적 이용가능성 (affordability)의 확보를 예로 들면, 네트워크사업자의 의무인지, 전송서비스사업자의 의무인지, 혹은 양자의 의무로 그 사이의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EU의 「2003년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하여 제정된 영국의 2003년 전기통신법 (Communications Act 2003)과 보편적서비스명령(DTI[2003])에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의 과제로 남아있다[24].

2. 진입규제의 완화

전자통신네트워크 또는 전자통신서비스에 진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개별면허시스템을 폐지하고 신고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일반인증의 구조를 도입하였다는 점, 또한 사업개시에 필요한 전화번호, 주파수 및 공익사업특권 등의 부여에 대해서도 책관성, 투명성 및 비차별성이 강조되어 규제당국의 자의성을 염격히 배제하려고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규제의 세부사항은 각국의 규제당국 (NRA :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두 가지가 우려된다. 첫째, 전화번호, 주파수 및 공익사업특권의 부여는 일반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각국의 규제당국의 운용 여하에 따라 오히려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미디어 획단적으로 일반인증의 구조를 도입했지만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건과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에는 통신과는 다른 규제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진입규제가 원칙적으로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각국의 규제당국의 운용 여하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여지가 남아 있다.

3.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

통신산업 부문에서 경쟁의 진전 상황에 대응하여 비경쟁 분야에만 사전규제를 부과하고, 경쟁강도가 높은 분야는 사후규제로 이행함과 동시에 경쟁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과도적인 방향성으로서는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시장획정에 있어서 가상적 독점기업 가설 등, 최근에 개발된 경제학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특히 IP시장에서는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향후 언제든지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설정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혁신시장 (emerging market)에서는 선점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를 사전규제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사전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보아들 필요가 있다(EU [2003b] 전문 13 및 15).

그러나 「2003년 프레임워크」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분야 고유의 사전규제와 경쟁법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 원래 EU 경쟁법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지배적이라고 판정된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25]. 이 때문에 「2003년 프레임워크」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분야 특유의 사전규제는 경쟁법에 의한 사후규제의 적용도 받는 이중규제의 가능성에 처해 있다. 사실 EU 문서에서도 “획정시장은 전자통신분야의 사전규제를 위한 것이므로 경쟁법에 기초한 사후적 규제를 위한 시장획정과는 다를 수 있다” (EU[2003b], p.8) 라고 하여 이중규제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통신분야 독자의 규제 근거로서는 네트워크의 외부성, 필수설비의 존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26]. 「2003년 프레임워크」에서도 통신분야 고유의 사전규제가 필요한 근거로서 기존사업자에게는 독점 시대의 특권에 기초한 인프라 투자에 의한 우위성이 있으며, 다른 경쟁사업자에게는 기존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고는 사업전개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EU[2003b], p.8).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획정을 통하여 사전적 규제를 받게 될 서비스는 필수설비의 도매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하며, 소매서비스는 경쟁법에 전면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2003년 2월에 발표한 Recommendation on Relevant Product and Service Market(EU [2003a])에 의하면 도매분야 뿐 아니라 소매분야도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통신분야의 전면 자유화가 실시된 것이 불과 5~6년에 불과해서 아직도 구 국영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현저한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EU의 규제 실태를 근거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관계를 일반화한 것이 표 4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보통신 분야 독자의 사전규제는 산업구조가 고정적이면서도 필수설비가 존재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특히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 적용하면 오히려 폐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언급하면, 정보통신 분야 고유의 사전규제는 필수설비가 존재하는 경우에 상호접속 규제로 한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상호접속 규제는 시장이 고정적인 전통적

전화서비스에 한하고, 인터넷접속서비스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된다. EU의 「2003년 프레임워크」에서도 접속회선의 세분화 의무는 동축 회선에 한정되어 있으며, 광케이블은 거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2003년 8월에 발표된 미국 FCC의 시내회선 세분화에 관한 신규제 (FCC[2003])에서는 광케이블뿐만 아니라 동축회선의 세분화 의무도 면제하였다[27]. 다만 미국에서 시내회선 세분화 의무 면제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만 작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여기에 추가하여 시내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로 인한 사업자간 불균형 성장이라는 측면도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비교

	사전규제	사후규제
기능	• 공정경쟁 조건을 정비하여 경쟁촉진	• 시장 실태를 사후적으로 조정 가능
장점	• 기존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질 경우에도 경쟁활성화 용이	•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 이업종간 상호진입에 대응 가능
단점	• 규제당국이 사전에 충분한 시장정보를 입수하기 곤란하므로 과잉 규제 또는 재량형 규제가 될 가능성 •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곤란 • 사전규제는 산업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업종간 상호진입에 대응하기 곤란 • 통신분야 독자의 규제와 경쟁법의 이중 규제 우려	• 사후적 대응으로는 손해의 회복 불가능 • 필수설비가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
적용	• 산업구조가 고정적이면서도 필수설비가 존재하는 분야	• 산업구조가 가변적이면서도 필수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

VI. 결 론

1998년 1월, EU 통신자유화 선언이 발표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15개의 가맹국 중 자유화 실시유예를 인정받은 5개국이 아직 음성전화서비스의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사업자사전선택, 번호이동성 의무화, 상호접속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여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이래 통신분야에서는 특히 인터넷과 이동통신 분야에서 급격한

기술발전과 수요확대가 있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척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발전 추세를 규제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EU에서는 1998년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각종 지침을 발표해 오다가, 「2003년 프레임워크」로 이들 지침을 통합하게 되었다.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충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의 틀은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과도기적 방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기에는 이해를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이 준비가 소홀할 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 규제체계의 한계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통신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이 규제체계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2003년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지 않고, 종래의 규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 융합을 반영한 규제체계라 하면서도 방송 컨텐츠와의 관련에서 통신과 방송이 별개로 취급되는 셈이 된다.

둘째, 네트워크와 전송서비스를 분리하여 규제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양자가 일체적인 것을 전제로 부과되어 온 규제를 어떻게 취급할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규제체계를 기초로 제정된 영국의 2003년 전기통신법과 보편적서비스명령에도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 이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 이 규제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분야 특유의 사전규제는 경쟁법에 의한 사후규제의 적용도 받는 이중 규제의 가능성에 처해 있다.

마지막으로 「2003년 프레임워크」에서는 전자통신네트워크의 범위에 인터넷 망을 포함시킴으로써 종래 사전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인터넷 망을 규제대상으로 편입시키게 되었다. 그렇지만 경쟁시장 여부의 판정은 가상적 독점기업 가설 등에 의하여 판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의 경우, IBP(Internet Backbone Provider) 시장은 국가에 따라 과점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시장은 항상 잠재적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이므로 사전적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회박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세

계 각국은 인터넷 산업 발전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의도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2004년 4월에 시행된 개정사업법 체제 하에서도 종래와 같이 ISP 시장을 사전규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다만, 사업폐지 등 중요한 사안이 있을 시에는 이용자에게 사정전에 알려야 할 “소비자보호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이와 같이 볼 때, 「2003년 프레임워크」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과 약화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각국의 규제기관에 일임하고 있다.

EU의 통신시장 자유화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진전과 더불어 그 동안 미국과 일본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규제정책에도 향후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9월, 정보통신부가 통신서비스 분류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시내/시외의 전화서비스의 통합, 음성/데이터 전송서비스의 통합,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범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개선안도 미디어 융합 및 규제완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2003년 프레임워크」와 정책기조를 같이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방송과 통신을 미디어별로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2003년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 제도 보다 훨씬 선진적인 규제 틀로 이해되며,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한 서비스 규제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관련 연구기관, 업계 등에서 많은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현안 과제이다. 본고에서 소개한 EU의 통신시장 규제완화 현황 및 전망 분석이 국내 통신규제완화 정책 수립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이므로 성급한 제도 정비는 바람직하지 않다. 빠른 법제화는 지속적인 법제 개선의 악순환을 낳을 우려가 크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이 인프라에 대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는 존재한다.

참고문헌

- [1] 古閑 裕朗, “英國貿易産業省(DTI), 歐州連合(EU)相互接續指令等への對應を諮詢,” KDD總研R&A, pp.17-18, 1998.2.
-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서비스 분류제도 개선

- 방안, 2003.9.
- [3] 김병룡 · 권오성, "EU 통신시장의 규제완화 동향 및 전망분석,"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 학회*, 제1권, 제3호, pp.419-435, 1998.12.
 - [4] EU, Green Paper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Marke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Equipment, COM(87)290, 1987.
 - [5] EU, Council Directive of 28 June 1990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marke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ONP, 90/387/EEC, 1990.
 - [6] EU, Council Directive of 5 June 1992 on the application of ONP to leased lines, 92/44/EEC, 1992.
 - [7] EU,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f April 1997 on a common framework for general authorization and individual licenses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97/33/EC, 1997.
 - [8] EU,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f 11 June 1997 on Interconnection in telecommunications with regard to ensuring universal service and interoperability through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ONP, 97/33/EC, 1997.
 - [9] EU,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amending Council Directive 90/387/EEC and 92/44/EEC for the purpose of adaption to a competitive environment in telecommunications, 97/51/EC, 1997.
 - [10] EU, Implementing the Green Paper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marke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equipment -State of discussions and proposals by the Commission, COM(88) 48, 1988.
 - [11] EU, Commission Directive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90/388/EEC, 1990.
 - [12] EU,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EEC Competition Rules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OJ 1991 C 233/2, 1991.
 - [13] 김병룡, "통신산업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변화 -영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전자공학회지*, *대한전자공학회*, 제23권 제1호, pp.74-84, 1996.1.
 - [14] EU, Sixth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Package, COM(2000)814, 2000.
 - [15] EU,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owards a new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associated services -The 1999 Communications Review, COM(1999)539, 1999.
 - [16] EU,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f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2000/31/EC), 2000.
 - [17] Peter Scott, "Regulatory Policy in an Era of Convergence," KISDI International Conference, Dec. 4, 2003.
 - [18] EU,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Framework Directive, 2002/21/EC), 2002.
 - [19] EU,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f 7 March 2002 on the authoriz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Authorization Directive, 2002/20/EC), 2002.
 - [20] EU[2002f], Open Network Provision Committee Working Document: The 2003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Implications for broadcasting
 - [21] EU[2002g], Guidelines on Market Analysis and the Assessment of SMP, 2002.
 - [22] EU[2003a], Recommendation on Relevant Product and Service Market, 2003.
 - [23] EU[2003b],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Relevant Product and Service Markets with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susceptible to ex ante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and services(Explanatory Memorandum), 2003.
- [24]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Universal Service) Order 2003(Statutory Instrument 2003 No. 1904), 2003.
- [25] Henzen, Anders & Schneider, Markus, "Has Liberalization of Telecommunications Failed in Europe," Communications & Strategies, Issue 50, p.39, 2003.
- [26] Larouche, Pierre, Competition Law and Regulation in European Telecommunications,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Oregon, pp.321-428, 2000.
- [27] FCC, Report and Order and Order on Remand a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in the Matter of Review of the Section 251 Unbundling Obligations of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s, Implementation of the Local Competition Provisions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and Deployment of Wireline Services Offering Advanced Telecommunications Capability(FCC 03-36), 2003.
- [28] 김방룡,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 및 규제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19권, 제1호, pp.116-126, 2004.2.

김 방 룡(Pang-Ryong Kim)



정회원

1978년 2월: 경북대학교 행정
학과 학사1994년 3월: 일본 쓰쿠바대학
교 사회공학연구과 박사1997년 12월 ~ 2001년 3월 :
통신위원회 전문위원2002년 6월 ~ 2002년 11월 :
캐나다 Simon Fraser Univ. 초빙연구원1982년 12월 ~ 현재: ETRI 정보통신서비스연구
단 책임연구원<관심분야> 정보통신산업론, 통신요금규제론, 통신
망상호접속제도, 인터넷전화제도 등